

당신이 주주총회에 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 누가 주주총회 의장이 되나?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나, 정관의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만일 주주총회 의장이 유고 시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즉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 및 출석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의 결의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 소집통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안건도 의결할 수 있나?

참석주주 전원의 동의를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는 통지·공고된 목적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결의할 수 없다.

❖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었던 이사후보를 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교체할 수 있나?

소집통지는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소집통지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이사회를 다시 소집하여 그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자를 교체한 후, 소집통지서를 다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사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

❖ 이사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안건은 주주총회에 상정될 수 없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에 대해 주주총회에 특정 안건을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장법인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0(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000억 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1,0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위임장을 취득하거나 또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주주제안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

주주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정기 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당해 연도 해당일)의 6주 전

까지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안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주주제안을 할 수 없는 사항은?

당연히 주주총회의 의결 대상인 사항에 대해서만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거나, 주주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이거나, 합병, 영업양수 또는 영업양도 및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이거나, 증권거래법상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이거나, 임기 중에 있는 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주주제안을 하였음에도 이사회가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하면?

주주총회 안건은 의제(議題)와 의안(議案)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의제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서, 예를 들어 “이사선임의 건”이 의제에 해당된다. 의안은 의안의 요령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갑을 이사로 선임한다”라는 안건이 이에 해당된다. 만일 이사회가 의제에 대한 주주제안을 거부한 경우, 소액주주는 해당 이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 주주제안을 관철시킬 수는 없다. 만일 이사회가 의안에 대한 주주제안을 거부한 경우, 예를 들어 소액주주가 지명한 이사 후보를 제외하고 현 경영진이 지명한 이사 후보만을 포함시켜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안건을 상정하였는데 위 안건이 의결되었다면, 그와 같은 주주총회의 결의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취소대상이 될 수 있다.

❖ 주주간 합의서에 서명한 주주가 그 합의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그 효력은?

주주간합의에 의한 의결권구속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하나, 이를 위반하여 행사된 의결권의 효력은 부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최근 동아제약의 경영권 분쟁 사례를 비롯하여 주식지분 확보를 통한 적대적 M&A가 활성화되면서 주주총회에서 반대 세력 간에 표 대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소액주주 세력이나 이른바 '장하성 펀드'로 더욱 그 유명세가 높아진 장하성 교수 같은 소액주주의 대리인이 주주총회 회의장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개진하는 장면이 언론에 방영되었는가 하면, 때론 기존 경영진이 이른바 '총회꾼'이라 불리는 대리인이나 경비업체 직원을 고용하여 소액주주의 발언을 제지하는 모습이 언론에 간간히 비춰지곤 한다. 이번 호에서는 2회에 걸쳐 운영방법 여하에 따라서 회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주주총회 운영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주주간합의에 위반한 의결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이나 주주간합의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결의에 따라 선임된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주주총회 의장이 불공정하게 의사를 진행한다던?

주주총회는 보통결의로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하고 새로운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의장이 불신임 동의를 무시하고 의사 진행을 강행한 결과 결의가 채택된 경우, 그러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주주총회 회의장에는 주주들만 출입할 수 있나?

법률자문이나 공증인 또는 의사진행을 돕기 위한 회사 임직원은 주주총회 의장의 허락을 받아 주주총회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다.

❖ 의결권의 포괄적 위임이 유효한가?

기간이 특정될 수 있는 한, 의결권의 포괄적 위임은 유효하다. 예를 들어 '향후 5년간' 개최되는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특정인에게 위임하는 약정도 유효하다.

❖ 위임장 사본을 제출해도 되나?

주주가 사전에 위임사실을 회사에 통보하는 등 다른 방법에 의해 위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위임장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한다.

❖ 한 사람이 각기 다른 주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이 경우, 각기 다른 주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은 주주총회일의 3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행사하겠다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주주총회를 연기하거나 속행하기로 결의한 경우 새로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하나?

주주총회가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를 결의한 경우 달리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주주총회 회의장에서의 표결은 반드시 투표용지로 하여야 하나?

주주총회 의장은 기립, 거수, 기명투표 기타의 방법 중에서 적절히 정할 수 있다. 다만 찬반 투표가 팽팽히 갈릴 경우에는 정확한 개표를 위하여 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장이 반대주주만 거수하게 하여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수만을 확인한 후, 의안이 가결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은 올바른 표결방법이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찬성주주의 주식 수를 세어 결의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어떻게 하나?

증권예탁결제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에 대해서는 그 발행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그 주주들에게 의결권의 직접행사,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의 뜻을 표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주주가 주주총회 회의의 5일 전까지 증권예탁결제원에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은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찬성 및 반대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이른바 Shadow voting).

변호사 엄재민

- 법무법인 화우(02-6003-7524, jmuhm@hwawoo.com)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유럽경영대학원(Insead) 경영학석사(MBA)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